

#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

-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\*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.

\* '21년 유예(천톤이상&CMR), '24년 유예(100~천톤), '27년 유예(10~100톤), '30년 유예(1~10톤)

-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“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 사업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## □ 지원대상

- 등록완료된 '24년 등록유예물질(100톤 이상~1,000톤 미만)

- 중소·중견기업 1개사 이상이 적극적 구성원(Active)인 물질

### 지원 제외 대상

- ① 지원사업(전과정, 컨설팅) 기선정 물질
- ②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

## □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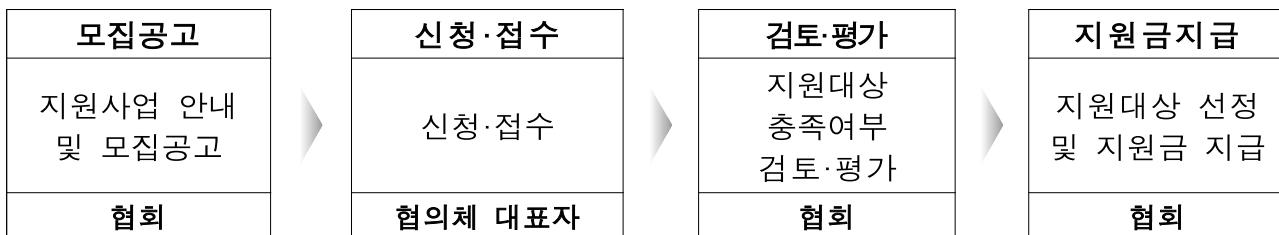
-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(등록 최대톤수 기준)

- 적극적 구성원(Active) 내 포함된 중소·중견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정액 지급

## □ 운영절차

- (담당기관)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

- (운영절차)



## □ 신청 및 대상선정

### ○ (신청기간) '24. 8. 1.(목) ~ '24. 11. 29.(금), 16:00

※ 지원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

### ○ (신청대상) 협의체 대표자

※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 대표자로 선정된 자

### ○ (신청방법)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([sbm.kcma.or.kr](http://sbm.kcma.or.kr))을 통해 신청

### ○ (신청서류)

구분	제출서류	비고
1	지원신청서	신청시스템 내 작성
2	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	신청시스템 내 작성
3	협의체 적극적 구성원의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	정부기관 발급본
4	컨설팅 계약서	협의체-컨설팅기관
5	협의체 협약서	
6	화학물질 등록 통지서	필수, 확인사항 참조

### ○ (선정방법)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

- 지원조건, 지원예산 규모,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

※ (평가기준) 중소기업 비율, 협의체 구성원수, 제조업체 비율 등

### ○ (선정결과) 월별로 선정하며, 익월 중 홈페이지\* 게시

\*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([www.kcma.or.kr](http://www.kcma.or.kr)), 산업계 도움센터([www.chemnavi.or.kr](http://www.chemnavi.or.kr)),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([sbm.kcma.or.kr](http://sbm.kcma.or.kr))

### ○ (지원금 지급) 3자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지급

## □ 확인사항

- 제출서류 미비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※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  - 필요시 지원대상 검토를 위해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- 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됨
- 본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확인된 경우 향후 협회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
-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 요청(추진현황 조사 등)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에서 제외해야 함
-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한 컨설팅기관<sup>\*</sup>과 계약된 경우에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
  - ※ 다만, 등록통지 이후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선정된 컨설팅기관 아니어도 신청 가능
  - \* 산업계도움센터 및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
- 협의체 대표자와 컨설팅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됨
- 국외 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·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
- 협의체 대표자가 등록최대톤수 구성원이 아닌 경우, 등록최대톤수 구성원의 등록통지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

## □ 문의처

담당기관	연락처
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(등록지원팀)	02-3019-6799, 6780

- ※ 붙임 : 1. 지원신청서 1부.
- 2.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1부.

## 불임1

## 지원신청서(신청시스템 내 작성)

## 등록 컨설팅 지원(협의체) 신청서

협의체 대표자 (신청인)	상호명		사업자등록번호	
	소재지(주소)			
	대표자(성명)		기업규모	대/중견/중/소
	담당자명		담당자연락처 (e-mail)	
	담당자연락처 (회사전화번호)		담당자연락처 (H.P.)	
신청물질	화학물질명		CAS No	
	지원요건	<input type="checkbox"/>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 중 중소·중견기업 2개사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 중 중소·중견기업 1개사		
컨설팅기관 정보	컨설팅기관명			

## [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]

- 수집 및 이용목적 :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
- 수집항목 : 성명, 전화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상호명, 주소, e-mail 등
- 보유 및 이용기간 : 5년
-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권리행사 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-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 따른 각 호 사항에 대하여 고지 받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본 협의체 대표자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수행하는 「등록 컨설팅 지원사업」에 참여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대 표 자 : (인)

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 귀하

불입2

##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(신청시스템 내 작성)

##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

신청인	상호명		사업자등록번호	
	담당자/전화번호		e-mail	
	주소			

위와 같이 000물질(고유번호: , CAS번호: ) 협의체의 적극적 구성원은 「등록 컨설팅 지원사업」신청에 과반수 이상 동의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2020-01

신청인 (인)